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제표준 정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제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신설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비상계획과를 투자유치과로 개편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14.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제18조제2항 중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및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를”을  
“기계융합산업표준과·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  
대응팀을”으로,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및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은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  
기구전략대응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  
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자문·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  
원회 구성·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시행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8조제1항 중 “비상계획과”를 “투자유치과”로, “수출산업과장”을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으로,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과장은 전문경력관 가군”을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8호”를 “제27조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8”을 “9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7”을 “94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80”을 “282”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8”을 “9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7”을 “94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  
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  
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  
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  
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05”를 “307”로 한다.

별표 7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1호(중전의 제3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국제  
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  
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③ (생략)                                                                                               |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u>제25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br>-----<br>-----<br>----- <u>제26호</u> -----<br>-----<br>-----.                        |
| ⑤ ~ ⑩ (생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⑪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⑪ -----<br>-----<br>-----.                                                                     |
| 1. ~ 11. (생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u>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 · 관리</u>                                                |
| 제18조(표준정책국) ① (생략)                                                                                                  | 제18조(표준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 · 국제표준협력과 · 산업표준혁신과 · 전기전자정보표준과 · <u>기계융합산업표준과</u> 및 <u>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u> 를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 | ② -----<br>-----<br>----- <u>기계융합산업표준과</u> · <u>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u> 및 <u>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u> 을 ----- |

술서기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산업표준혁신과장·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및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신설>

-----  
-----  
-----  
-----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  
-----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자문·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시행

제28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에 관리과·수출산  
업과 및 비상계획과를 두되, 관  
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  
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비상계획  
과장은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  
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제1  
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  
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④ 비상계획과장은 제27조제2  
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  
항을 분장한다.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  
의 협조

제28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의 하부조직) ① -----  
-----  
----- 투자유치과-----  
-----  
-----  
----- 수출산업과  
장 및 투자유치과장-----  
--- 시설사무관-----  
-----  
---.

② ----- 제27조제2항 각  
호-----  
-----.

③ ----- 제27조제3  
항 -----  
-----.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7조제4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한시 정원) ① 삭 제

② 조선·해운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④ 삭 제

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제42조(한시 정원)

<삭 제>

<삭 제>

⑥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958</u> | <u>960</u> | +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947</u> | <u>949</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서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 | <u>280</u> | <u>282</u> | +2  |

|                                                                                            |        |        |  |
|--------------------------------------------------------------------------------------------|--------|--------|--|
| 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br>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br>·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br>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br>연구관<br><br>·<br>· | ·<br>· | ·<br>·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958</u> | <u>960</u> | +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947</u> | <u>949</u> | +2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 | <u>305</u> | <u>307</u> | +2  |

|                                                                         |        |        |  |
|-------------------------------------------------------------------------|--------|--------|--|
| 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br>·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br>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br>연구관<br><br>·<br>· | ·<br>· | ·<br>· |  |
|-------------------------------------------------------------------------|--------|--------|--|